경비세칙

제 정 2008. 8. 28 개 정(1) 2020. 9. 2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본사 및 지사의 시설보안, 화재예방,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이 세칙에서 경비는 기계경비 및 당직근무로 구분한다.

제3조(총괄 및 주관) 경비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부문장이 총괄하며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본사는 경영지원담당부서장이, 지사는 당해 지사장이 주관 한다.

제2장 기계경비

- 제4조(기계경비) 기계경비라 함은 근무시간외(휴일포함)의 경비를 직원의 당직근무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인기계경비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무인 기계경비제도를 말한다.
- 제5조(기계경비의 대상) 기계경비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본사 및 지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**제6조(기계경비시간)** 기계경비시간은 기계를 개시한 시간으로부터 다음 근무일 해 지시간까지로 한다.
- 제7조(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당번의 편성) ①본사 경영지원담당부서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계경비관리보안책임자(이하 "관리책임자"라 한다)를 지정하고 일일기계경비담당자(이하 "당번"이라 한다) 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.

- 1. 당번은 공사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부서장을 제외한 직원 중 1인으로 편성한다.
- ②경영지원담당부서장 및 지사장은 매월 종료 5일전까지 당번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당번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당번근무명령서에 당번근무자의 확인을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리책임자의 임무)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기카드 및 마스터키(각종출입문 열쇠 묶음)의 보관관리
- 2. 당번근무자에 대한 기계경비기기 조작요령 교육 및 지휘 감독
- 3. 비상연락체계의 수립 및 유지
- 4. 그 밖에 기계경비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당번의 임무) 당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대외적인 업무처리
- 2. 회사재산의 보호 및 사고예방
- 3.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
- 4. 기계경비 개시 및 해지조작
- 5. 당번근무일지 작성
- 제10조(연락체계유지) 관리책임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,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그 변동사항을 경영지원담당부서장 및 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열쇠관리) 관리책임자는 예비열쇠 및 사용열쇠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기카드 및 마스터키 인계인수사항을 당번근무일지에 기록,유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기계경비진행중 출입) 기계경비 진행중에 특별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계경비를 해제하고 출입하며, 용무를 마친 후에는 기계경비를 개시시킨다.
- 제13조(사고예방조치) 경영지원담당부서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 - 1. 계획적인 범죄와 동시다발사고에 대한 대책
 - 2. 면식범에 의한 도난 예방대책

- 3. 경비용역회사 전용회선의 고장 및 정전시의 대책
- 4. 직원에 대한 자체보안교육

제14조(비치목록) 경영지원담당부서장 및 지사장은 다음 서류 및 장비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당번명령부
- 2. 당번일지
- 3.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
- 4. 비상연락망
- 5.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
- 6. 비상열쇠 보관함
- 7. 비상용 후레쉬
- 8. 그 밖의 필요물품
- 제15조(당직근무의 전환) ①경영지원담당부서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기계경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로 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지사장은 건물내부 공사 또는 정전 등 일정기간동안 당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용역회사와 협의 후 경영지원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.
 - ③그 밖에 회선고장, 경비용역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기계경비가 불가능할 경 우에는 즉시 경비용역회사의 경비원을 상주시켜야 한다.

제3장 당직근무

제16조(당직) 당직이라 함은 영업시간외 및 휴일에 일시적으로 기계경비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시설을 경비하며,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, 물품의 접수 보관과 각종 중요연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7조(당직근무의 구분) ①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

- ②일직은 휴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말한다.
-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.

④당직근무의 종료시까지 인계할 다음 당직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계시까지 또는 정상업무 개시시까지 근무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사항을 익일 당직명령 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당직근무자의 구분)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와 당직자로 구분한다.

②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의 명을 받은 직원중에서 상급자를 말하며 당직자를 지휘·감독한다. 당직자는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③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자의 수를 증감하거나 당직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9조(당직근무자 편성) ①기계경비 중단 등으로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 당직근 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1. 본사
- 가. 당직책임자
- 1) 평일, 토·공휴일 숙직 : 1명
- 2) 토·공휴일 일직 : 1명
- 나. 당직자
- 1) 평일, 토·공휴일 숙직 : 1명
- 2) 토·공휴일 일직 : 1명
- 2. 지사

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한다.

- **제20조(당직명령 및 감독)** ①당직명령은 본사는 경영지원담당부서장, 지사는 지사 장이 하다.
 - ②당직명령권자는 당직순서를 정하여 당직근무일전까지 당직근무자를 임명·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, 휴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당직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동안 당직을 면제한다.

- 1.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
- 2. 여자직원은 숙직근무 면제
- 3. 출장, 파견, 휴가 등 정당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
- 4. 당직명령권자가 업무수행상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2조(당직신고 및 인계인수)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 명 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당직명령권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〈별지 제1호〉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·확인하고 당직근무 의 종료시에 이 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
제23조(당직근무자의 임무)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방호, 방범, 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 순찰점검
- 2. 문서수발 및 관리
- 3. 외부인 출입통제
- 4. 보고 및 연락체계의 유지
- 5.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제한
- 6. 긴급사태 및 비상근무 발령시 임직원 비상소집 등 제반조치
- 7. 보안일일 점검사항 이행 여부
- 8. 그 밖에 당직명령권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

제24조(당직근무수칙)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.

- 1.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주관부서에 집합하여 당직책임자로부터 당직 근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수명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하며, 당직근무 종료 직후 당직책임자에게 이상 유무의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당직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, 비상전화,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.
- 제25조(긴급사태발생시 조치) 당직근무자는 재난, 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권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(당직근무자의 금지행위)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.
 - 1. 근무장소 무단이탈 행위 등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

- 2. 음주 또는 도박 등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
- 3. 외래인의 동숙 허용행위
- 4. 그 밖에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제27조(휴식 및 휴무) ①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가침 할 수 있다.
 - ②숙직근무자는 익일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할 수 있다.
- 제28조(당직일지 등의 기록)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근무 익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9조(당직실의 비품)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 - 1. 당직근무일지
 - 2. 임직원 비상소집연락망
 - 3. 관계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
 - 4. 비상열쇠보관함
 - 5. 당직 및 비상근무 관계규정
 - 6.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
- 제30조(당직보고) ①본사 당직책임자는 기획재정부 당직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.
 - ②지사의 당직책임자는 재난,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본사 당직책임자에게 이 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.
- 제31조(당직점검)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**제32조(당직수당)**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8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

1. 당직근무표찰

<u>당 직 근 무 표 찰</u> 한국투자공사 당 직 8 cm

주 : 1) 재료 : 백색아크릴

2) 글씨 : 20p의 크기의 검정색 고딕<별지 제1호 서식>

<u>당 직 근 무 일 지</u>

200 년 월 일(요일)

관리책임자	

담당자	경영지원실장

당 직 근 무 자					지 시 받 은 사 항		
소	속	직 위	성 명	서 명			
최 종 퇴 실 자							
충		성 명	퇴실	퇴실시간		발신처	비고(우편종류 등)
			시 분				
시		시 분		문			
			시 분		서 처		
			시 분		리 현		
			시 분		황		
			시 분				
			시 분				
순찰		순 찰 시 간 시 분 ~ 시 분				특	- 이 사 항
	시 분 ~ 시 분						
기 타							